

#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운영요령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1) 세계적 수준의 해외기술자를 도내 산업현장에 투입,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지도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과 기계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이전을 촉진시켜 기계산업관련 기술개발 능력 및 국제화 마인드 배양

### 나. 사업근거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3
-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제기술 협력의 촉진)
-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 (4)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3호/04. 10. 12) 제2조 제1항 제3호
- (5)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중 지역산업기술지원사업 관리지침

### 다. 지원분야

- (1) 기계산업분야 : 조립금속,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기계 부품·소재,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중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등 한국산업 분류에 의한 기계산업
- (2) 로봇산업분야 : 로봇제조, 로봇부품 등의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로봇기계 산업
- (3) 기계산업 관련기술분야 :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분야

## 라. 신청자격

- (1) 대상기관 : 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도내의 제조업체
- (2) 신청자격제한
  - (가) 신청된 과제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나)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참여제한 등의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또는 과제수행책임자
  - (다) 기타 지역산업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제재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과제수행 책임자
- (3) 우선 지원
  - (가) 초청 해외기술자를 2개 이상 업체가 동시 활용할 경우에 가산점 부여
  - (나)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참여업체 지원 신청 시 가산점 부여
  - (다)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는 계속 활용 신청 시 우선 지원
  - (라) 가산점 부여 등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마. 초청대상자 자격

- (1)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분야 우수 기술을 가진 자.(한국 국적자 제외)
- (2) 동 사업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자.

## 바. 주관 기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

## 사. 지원제한

- (1) 활용업체별 인원 제한은 다음과 같다.
  - 상시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 기업 : 2명 이내
  - 상시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 기업 : 1명 이내
- (2) 동일인 계속 활용은 2년 이하로 제한한다.

아. 지원내용

(1) 자문료

(가) 자문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1) 경력·국가별 상한액
- 2) 월 근무일수
- 3) 평가위원 심의점수
- 4) 활용업체별 자문료 지원비율
- 5) 사항별 가중치 등 세부 산정방법은 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나) 활용업체별 자문료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상시 종업원수가 **300명** 미만 기업 : **80%**
- 2) 상시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 기업 : **60%**
- 3) 동일인 계속 활용 시 지원비율 차등(세부 지원비율은 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개인별 경력과 국가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경력·국가별 자문료 상한액』 이내로 지원한다. (단 업체 부담금 증액 지원은 가능)

(라) 활용업체의 장은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 별도 계정 및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 경력·국가별 자문료 상한액

- 경력별

등급	사격내용
<b>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취득 후 18 , 25 , 29 일 이상의 기간동안 친업체, 연구·교육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중사한 해외기술자</li> <li>· 산업체에서 30 일 이상의 기간동안 기술실무업무에 중사한 실무전문기술자</li> </ul>
<b>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취득 후 14 , 19 , 24 일 이상의 기간동안 친업체, 연구·교육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중사한 해외기술자</li> <li>· 산업체에서 25 일 이상의 기간동안 기술실무업무에 중사한 실무전문기술자</li> </ul>
<b>C</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취득 후 10 , 15 , 19 일 이상의 기간동안 친업체, 연구·교육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중사한 해외기술자</li> <li>· 산업체에서 20 일 이상의 기간동안 기술실무업무에 중사한 실무전문기술자</li> </ul>
<b>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취득자, 15 , 19 일 이상의 기간동안 친업체, 연구·교육기관에서 연구개발활동이 중사한 해외기술자</li> <li>· 산업체에서 20 일 이상의 기간동안 기술실무업무에 중사한 실무전문기술자</li> </ul>

- 국가별 자문료 상한액

(단위: 천원 / 년)

등급	자문료 상한액			비고
	미국, 일본 HJT 참가	러시아, 유럽농구 인도	기타	
<b>A</b>	90,000	80,000	70,000	
<b>B</b>	80,000	70,000	60,000	
<b>C</b>	70,000	60,000	50,000	
<b>D</b>	60,000	50,000	40,000	

(2) 항공료

(가) 항공료 지원대상은 초청 해외기술자 및 그 배우자로 한다.

(나) 항공료는 연 1회(배우자 포함) 실비로 지원한다.

(다) 해외기술자 본국 거주지 최인접 공항에서 목적지 최인접 공항까지의 **Economy class** 왕복항공료(인천↔김해간 항공료 포함)를 지급한다.

※ 선박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

(라) 제출서류 : 항공료지원 신청서 1부 및 사용한 항공권(사본 가능) 1부.

**(3) 이전비**

(가) 이전비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나) 기 입국하여 국내 거주중인자는 제외한다.

(다) 지역별 지원기준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1) 유럽 및 동구지역 : **2,000**천원

2) 북미, 호주, 인도지역 : **1,500**천원

3) 일본, 중국, 러시아지역 : **1,000**천원

4) 기타지역은 상위 인접한 지역수준으로 지급

**(4) 주택임차료**

(가) **1년 이상**,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해외기술자에 대하여는 주거용 임대아파트 지원 (단, 희망 업체에 한함)

(나) 임대아파트 규모는 전용(전유부분)면적 기준으로 **1인** 거주시 **22**평 이하, **2~4인** 거주시 **27**평 이하, **5인 이상** 거주시 **29**평 이하로 거주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차상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임차료는 매매가액 대비 **75%** 이내로 **8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저당권 등의 비율은 매매가액 대비 **50%** 이내여야 하며, 임차료와 저당권 설정 금액 합산액이 매매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주거에 필요한 장식, 집기 및 가전제품, 가구 구입 등의 경비와 아파트관리비, 전기료, 수도, 가스사용료 등의 경비는 활용기관에서 부담한다.

(마) 입주희망이 많을 때는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지원한다.

(바) 활용기관은 해외기술자 입국 최소 **1개월전** 신청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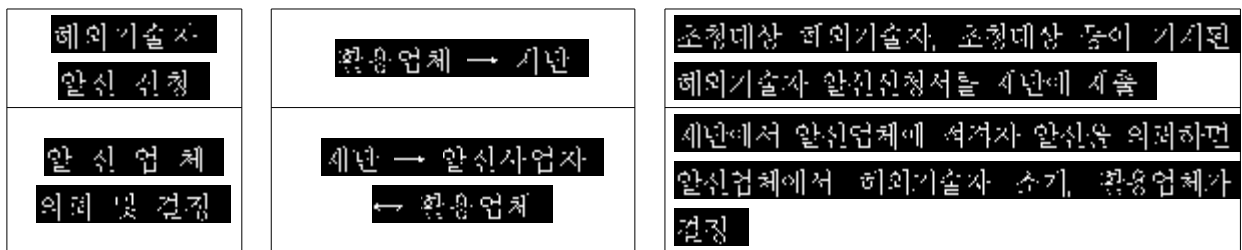
※ 해외기술자는 결정되는 즉시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별지**10**)를 작성신청을 하여야 함.

#### (4) 알선료

- (가) 알선 희망 중소기업체에 한해서 알선료를 지원
- (나) 알선료는 재단 및 신청업체가 각각 **50%** 부담한다.
- (다) 신청업체는 업체 부담금 **50%**를 재단으로 입금해야 하며, 재단은 알선료의 **10%**를 착수금으로 알선 사업자에 지급한다.

## 2. 추진체계

### 가. 해외기술자 알선절차(중소기업에 한함)



※ 활용업체에서 초청대상 해외기술자가 자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2) 해외기술자 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

신청서 접수
평가위원구성 현 가
해외기술자 초청지원계약
사업미신청 및 지원
과제수행
중간보고서 제출 - 1기
최종보고서 및 사업미진행 제출
최종평가
결과보고 사업미정신환수

활용업체 → 기년
제년 ← 심의위원
활용업체 ← 기년
활용업체 ← 기년
활용업체
활용업체 → 제년 → 활용업체
활용업체 → 제년 → 활용업체
제년 → 활용업체
제년 → 신자국, [TEP]

초청기술자가 정해지면 신청서 제출
평가위원들의 평가 및 시급 차분료 결정
해외기술자 입국 후 30 일 이내 계약체결 ( )
항공료는 신청 후 7 일 이내 시급 이전미는 신청 즉시 시급 차분료는 반기별로 시급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초청 기술자는 과 제수행에 선단
사업기간의 1/2 (3) 일 이내 중간 보고서 제출
사업기간 7 일전까지 최종 보고서와 사업 미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외부평가위원 참여하여 사업별 최종 평가
결과 보고

### 3. 추진내용

#### 가. 해외기술자 알선신청

- (1) 알선사업자 :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서 재단에 등록된 인력알선 사업자를 말한다.
- (2)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에 적합한 해외기술자를 초청할 수 없을 경우 재단에 등록된 알선사업자에 의뢰하여 책임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 (3) 부담비율 : 업체에서 해외기술자 알선신청서(별지1)에 의거 재단에 신청, 알선료는 재단과 신청업체가 각각 **50%** 부담한다.
- (4) 알선사업자 결정 : 재단에서는 알선사업자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최저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알선의뢰 한다.
  - (가) 알선의뢰업체, 알선사업자, 재단은 해외기술자알선 위탁계약서(별지2)에 의하여 계약 체결 한다.
  - (나) 알선사업자는 알선의뢰 업체와 협의 후 책임자를 결정한다.
- (5) 활용업체에서 알선요청 취소 후 재알선 요청시 당초 알선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추후 인력DB에 의한 초청대상자 결정 (DB구축 계획)

#### 나. 사업신청 및 평가(심의)

- (1) 초청대상자가 결정되면 활용업체에서는 해외기술자초청신청서(별지3)를 작성하여 재단에 신청(수시)
- (2) 재단은 산·학·연·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기술자의 적임 여부 및 지원 자문료를 결정한다.
- (3)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한다. 단, 사업신청서 보완 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4) **2개** 이상 업체가 해외기술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및 지역산업기술개발 과제 참여업체 및 전년도 최종 평가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세부 가산점은 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해외기술자 입국 및 계약체결

- (1)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한다. 단, 비자발급 지연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사유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의 장은 **2개월**에 한해 연장·승인 할 수 있다.
- (2) 활용업체에서는 초청대상자의 입·출국 제반사항을 안내 지원하여야 하며 초청대상자 입국 후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한 입국확인서(별지 **4**)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초청지원 계약서 **2부** (별지 **5**)
  - (나) 자문계약서 사본 및 번역본 **1부** (자유양식, 해외기술자와 활용기관간 계약)
  - (다) 건강진단서 **1부** (별지 **6**)
    - ※ 본국에서 작성한 것 - 기 체류자는 국내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것
  - (라) 여권사본 **1부** (입국일자, 비자 및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
  - (마) 항공료 지원신청서(별지 **7**) 및 사업비 신청서(별지 **9**) 각 **1부**
  - (바) 사업비 입금통장 사본 **1부**
  - (사) 자부담금 입금 증빙서 **1부**
- (3) 활용업체는 해외기술자 입국신고와 동시에 재단과 초청지원계약을 체결한다.
- (4) 이때 해외기술자와 초청업체가 체결한 고용계약서(자유 서식)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계약체결변경

- (1) 활용업체의 장은 연구개발 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재단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에 사업내용 변경의뢰서(별지 **8**)를 첨부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과제종료 **3개월** 전까지 변경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2) 선정된 해외기술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사망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 (3) 변경요청 사항에 대한 승인은 해당과제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승인하며 해당과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4) 변경승인은 활용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해서 처리하되 그 이후에 제출된 내용 및 활용기관의 변경, 연구과제 변경 등 주요 변경 승인신청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한다.
- (5) 활용업체가 기 제출한 초청지원 계약서상의 초청 활용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청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자문료, 항공료, 생활비, 상해·의료보험 가입 등) 등은 활용업체 또는 해외기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재단의 승인을 받아 초청대상자를 계속 활용하는 경우에도 당초기간 종료 7일전까지 초청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초청기간 종료 후 접수된 서류의 기간연장은 불인정하고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 제출서류

항 목	제 출 서 류
○ 초청대상자 변경	○ 신규 신청 시 첨부서류 일체
○ 활용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 활용업체 변경	○ 변경전후 대비용 ○ 상증된 변경전후 업체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신규 신청 시 첨부서류 일체
○ 연구과제 변경	○ 연구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 활용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마. 사업비신청 및 지원

- (1) 항공료는 항공료지원신청서(별지 7), 자문료와 이전비는 사업비신청서(별지 9),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입주신청서(별지 10)에 의거 재단에 신청한다.

- (2) 항공료는 접수 후 7일 이내 지급하고, 이전비는 이전 확인 후 일시불로 3일 이내 지급하며, 자문료는 년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
- (3) 활용업체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 및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본 사업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가) 통장의 예금주는 활용업체의 장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통장의 개설은 사업 수행 중에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 (다) 계약 시의 입금계좌와 다른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거나,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4) 활용업체의 장은 국비 지급전에 본 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을 선입금하여야 하며, 2차분 사업비는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 (5)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사업 종료 후 반드시 재단 통장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의 강제 이자를 적용한다.
- (6) 활용업체의 장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의무가 있다.

#### 바. 기술개발 과제수행

- (1) 해외기술자는 초청활용업체의 기술개발 또는 기술지도 과제수행에 전담하여야 하며, 월 근무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월 근무일수 부족분에 대한 자문료 등을 환수할 수 있다.
- (2) 해외기술자는 다른 업체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재단이 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응해야 한다.
- (3)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 학술행사, 학회 발표, 강연 등에 해외기술자 본인이 직접 참여할 경우에 한해서 참석할 수 있다. 단,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 (4)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저서·논문 등을 발표할 수 있다.

## 사. 중간보고서 제출

- (1) 7개월 이상 활용하는 업체는 활용기간의 **1/2**지점에서 **1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중간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초청활용 중간보고서 **1부 (별지 11)**
  - (나) 국민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다)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1부(별지 13)**
- (2) 재단은 제출된 중간보고서의 평가를 위하여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 현황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 (3) 주요 평가항목
  - (가) 연구과제의 진척도
  - (나) 사업 수행절차의 적정성
  - (다) 자문료 사용의 적정성 등
- (4) 중간평가결과는 “지원계속”, “지원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하되 과제 수행의 최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완료된 과제는 “조기완료”,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이 양호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지원계속”, 과제 수행 결과가 불량하여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는 “지원중단”으로 결정한다.
- (5) 보고서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는 제출시 까지 사업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사업비 사용의 부적정, 근무일수 미준수 등에 대하여는 부정사용 사업비 및 미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아. 최종보고서 제출

- (1) 활용업체의 장은 초청기술자 활용 종료 **7일**전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초청활용 결과보고서(별지 **12**) **5부 : CD** 또는 디스켓 포함
  - (나) 사업비 정산서 **1부 (별첨 13)**
  - (다) 국민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라) 여권사본 **1부**

- (2) 최종평가는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한다.
- (3) 최종평가 시 활용업체의 활용책임자의 자체평가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 (4) 주요평가 내용
  - (가) 초청활용 목표 달성도(계획 대비 추진 실적)
  - (나) 초청활용 내용의 우수성
  - (다) 초청활용을 통해 이룩한 성과 및 기술적 파급 효과
  - (라) 초청활용을 통해 이룩한 성과의 활용방안의 우수성
  - (마)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특허, 발표회 개최 등)
- (5) 최종평가는 “성공”, “실패”로 구분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6) 평가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중단과제 조치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 4. 사후관리

### 가. 사업비관리

- (1) 사업비 지급의 적정여부에 대한 활용업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활용업체의 장은 사업비 지급내역서 등의 서류를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3) 활용업체에서는 정산결과를 재단에 통보하고 재단은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제재 내용 및 대상

- (1) 재단은 동 사업 운영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행위별 제재내용(별지 **14**)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 (2) 활용업체는 사업 종료 후 사업신청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등 사업 관련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재단은 성과 보고서, 관리카드 등 필요에 따라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활용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비협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과제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3) 재단은 참여제한 대상과제 중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활용업체, 활용업체의 장, 활용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신규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총 지원된 자문료 중 상환되지 않은 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 및 현물로 환수할 수 있으며, 중단기간에 대한 경비는 일할 계산 반납한다.
- (5) 환수는 현물 또는 현물의 잔존가치에 상당한 현금으로 환수 할 수 있다.
- (6) 사업중단 등에 따른 환수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유의사항

- (1) 주택임차 지원은 활용업체에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며 입국확인서 제출이후 임대주택 입주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다.
- (2) 재단의 승인없이 해외기술자의 일시귀국 또는 조기귀국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3) 활용업체는 해외기술자의 활용에 관련된 초청장 발급, 입국비자 발급지원 및 초청대상자에 숙박시설 제공 등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기술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활용업체는 해외기술자와 자체규정에 따라 자유양식으로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사본 및 번역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해외기술자와 자문계약서 작성 시 활용기관의 책임 및 부담 조건 등을 세부 계약조항에 명기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해외기술자의 과도한 요구를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 (6) 또한 유치활용실적이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흡하거나 해외기술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조기 종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지시키도록 한다.
- (7) 초청대상자의 복무 및 제반관리는 활용업체의 자체 복무지침에 따르며 이와 관련된 초청대상자의 관리의무는 전적으로 활용업체의 장과 활용책임자에 있다.
- (8) 입국확인,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각종 승인요청 등 해외기술자초청 기술지도사업 활용에 따른 공식 통지사항은 활용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9) 해외기술자는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30**일내에 재단과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10) 활용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는 **5일** 이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활용기관의 책임하에 시행할 수 있다.(월 **15**일 이상 근무에 한함)

【별지1】

## 해외기술자 일선 신청서

<b>초청 분야</b>	<b>대 간 류</b>		<b>출 문 부</b>
<b>활용 예정기간</b>	300 --- 300 ( )		
<b>초청 해외기술자</b>	<b>국 세</b>		<b>희망연령</b>
	<b>초빙분야</b> ( )	※ 필요시 별시 사용	
	<b>선공 및 학위</b>		<b>근무경력</b> <b>년 이상</b>
	<b>월 지급가능 자급료</b>		<b>월 근무일수</b>
	<b>활용 부서</b>		<b>지 위</b>
<b>활용책임자</b>	<b>성명( )</b>		<b>주민등록번호</b>
	<b>Tel</b>		<b>핸드폰</b>
	<b>Fax</b>		<b>E-mail</b>
	<b>주 소</b>		
<p style="text-align: center;">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활성을 위하여 해외기술자 일선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b>활용 책임자</b>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 ) (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귀하</p>			

※ 초청분야는 별지3 「신청서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

【별지2】

## 해외기술자 알선 위탁계약서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를 “갑”으로 하고, (알선사업자)를“을”로 하고, (활용업체)를 “병”으로 하여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해외기술자 알선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이 추진하는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중 해외기술자 알선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권리의무) ① “을”은 “갑”이 의뢰하는 해외기술자를 “병”에게 알선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해외기술자 알선에 앞서 사전에 “병”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여야 한다.

③ “갑”“을”“병”은 본 계약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이행시기) ①“을”은 “갑”의 해외기술자알선의뢰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병”에게 알선하여야 한다. 부득이 알선이 성사되지 않을시 “갑”“을”“병”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기간 내에 알선이 성사되지 않을시 “을”은 “갑”에게 알선만료일 이후 7일 이내에 알선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을”의 요청이 없을 시는 알선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조건) ① “알선”이라함은 “을”이 알선한 해외기술자가 “병”의 승낙이후 해외기술자가 작성하는 “초청승낙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 해외기술자가 입국하여 자문도중 “병”과 해외기술자간 계약관계가 해지되었을시 “병”은 기 지급한 알선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③“을”은 해외기술자초청사업 알선업무 추진 중 취득한 “병”의 업무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비용부담) ①알선료는 “을”의 견적 제출에 따른 “갑”의 결정에 따라야하며 “갑”과 “병”이 각 50%씩 부담한다.

{“병”의 부담금액 : 총금액 원(W )중 금 원(W )}

②“병”이 부담하는 알선료는 “초청승낙서” 작성 완료후 “갑”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③알선료는 해외기술자가 입국한 후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착수금(“갑”과“을”이 부담하는 알선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이 “갑”을 통하여 “을”에게 알선 의뢰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한다.

제6조(계약해지 및 환불) ① “갑”은 “을” 또는 “병”이 본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갑”이 “을”에게 알선 의뢰 후 “병”이 알선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 기한 내 알선하지 못한 경우 착수금은 정산 후 “병”에게 반환한다. 다만, 알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조치사항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착수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을”이 “병”에게 해외기술자의 경력 등을 허위로 제시하여 “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이 경우 “갑”은 알선업체 지정에서 “을”을 제외시킨다.

제8조(의사표시)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권리이전) 본 계약서에 의한 “을”의 해외기술자 알선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작성과 보관) 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3통을 작성하여 “갑”“을”“병”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 ○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6(신월동 100-2)

을(알선사업자)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병(초청활용업체)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별지 3】

<b>경남기계산업기술지원사업</b>			
<b>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신청서( , )</b>			
신청 분야	대인부	중인부	소인부
인구 사업명			응 인구사업비
인구 비서명			인구 기금
원용업체	업 처 명		
	주 소		
	URL 주소		
	기관구분	중소기업 ( ) ( )	주 생산품
원용책임자	기업규모	지방유( )	상식규모조수( )
	주 소 속		
	성명( )	주민등록번호	
원용팩인지	[전]	핸드폰	
	[fax]	E mail	
		팩스	
주 소	신청 기금	~	원/년/월/일
	성명( )	~ 기	
	주소기관		
	부서/직위	현장 및 학위	
	주 소		
주 소	[전]	[fax]	
해외기술자	희망 기금도	원/ ( %) : / ( %)	
원용업체	항목명정도	원/기/양목	
	주내지원	지체액고( ) 지원요청( )	기준장민 수( ) : 여부 및 비위 배우지( ) ( )
	기원용 여부	기금 : ~	위주( ) 일
	신청원용업체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1 ( )		
2.	1 ( )		
3.	1 ( )		
4.	1 ( )		
2000 년 월 일			
원용 책임자 ( ) ( )			
( ) ( ) ( )			
<b>제 단 법 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귀하</b>			

※ 붙임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 1. 활용 계획서

## 가. 과제 개요

과제명		
활용 책임자	과제 성격	1. ( ), 2. ( ) 3. ( ), 4. ( )
과 제 개 요	연 구 개 념 목 표	연구개념의 최종 목표를 기술서 측면에서 개조적으로 기술할 것
	연 구 개 념 내 용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 ), 품질 등을 가능한 정 량적으로 서술할 것
	연 구 개 념 결 과 활 용 방 안	이성되는 활용 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주 가 연구, 기술이전 등을 서술할 것

## 나. 초청의 필요성

### (1) 초청필요성(중요성)

- 기술적 특성 : 해당분야 기술수준 및 동향분석에 따른 사업 필요성 제시
- 산업적 특성 : 해당 산업(기술)의 현황 및 경제성 분석에 따른 필요성 제시
- 환경적 특성 : 지역 내 제도 등에 따른 사업 필요성 제시

### (2) 지역 내·외 관련 기술의 현황

- 국내 타 업체의 관련 기술 현황 및 동향
-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기술 현황 및 동향
- 주요 경쟁국가의 현황 및 동향

## 나. 사업(활용) 목표 및 내용

### (1) 사업(활용) 목표

주요 목표	시무 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 ( , 매출증가 에 , 고 융합을 중 구체적으로 제시)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2) 사업(활용) 내용 및 범위**

사업 내용	시무-목표	사업 범위 등
※ 구체적 목표지를 중심으로	○	○
기술( 해외기술자가 담당할 업	○	○
무를 중심으로)	○	○
	○	○
	○	○
	○	○
	○	○
	○	○
	○	○

**(3) 추진 전략**

**(가) 추진방안**

※ 사업(활용) 내용 및 목표별로 주요 전략을 제시

**(나) 추진 조직**

※ 해외기술자 활용 시 필요한 추진조직을 표로 기재하고 세부조직의 역할 및 배치 인력 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관련 기술 및 업체현황 조사**

- 본 과제와 유사한 내용을 연구하는 기술자 정보
- 신청기관의 준비 정도(시설 및 여건 등)
- 해외기술자 접촉 과정
- 기타 자문료 등 추가 지원 내용

다. 월별 활용 세부내역

	기간 ( )	활 용 시 구 내 역	비 고
	초청 예정일 이) 2005. 8	월별로 초청 해외기술자의 사무 환경 내역을 기술할 것	
	2005. 9		
	-		
초	-		
청	-		
일	-		
경	-		
	-		
	-		
	-		
	-		
	-		
	-		

##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 초청 활용 기대 효과

#### (가) 직접적 효과

※ 매출액, 수입대체, 특허 등 지적재산권, 학술지 게재, 학회 논문 발표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생산성 증대 효과
- 매출액 증가 효과
- 고용 창출 효과
- 수입대체 효과
- 지적재산권
- 학술 활동(게재, 발표, 강연 등)

#### (나) 간접적 효과

※ 잠재적 경제 효과 등을 기술

### (2) 사업성과물의 활용 방안

※ 사업결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 등을 기술

## 마. 국내 체류 중 기타 활용 계획

※ 동종 또는 이종의 타 업체 기술 자문, 대학연구소 등 강연, 세미나 계획 등을 기술

바. 해외기술자 활용성과 개요(계속사업의 경우 작성)

**※ 【     】 계속 신청 해외기술자 성과 개요**

**※ 동일 해외기술자의 계속 유치인 경우 국내에서의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상세히 기술할 것**

## 2. 활용 업체의 주요 사업추진 실적

구분	사업명 및 내용	년도	시원기관

※구분에는 주관, 참여, 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요

## 3. 사업 참여 인원 현황

### 가. 활용 책임자

####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 }	주민등록번호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부서		F A X	
	직위		휴대전화	
	주소	{ - }	E-mail	
주택	주소	{ - }	전화	

####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선 공	학 위
...			
...			
...			
{ }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지 위	비 고
...			
...			

**(4) 지적재산권**

인원 번호	지적재산권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번호 / 출원·등록자수	비 고

**(5) 해외기술자(또는 소속기관)와의 교류실적 및 주요 성과**

기 간	교류실적 및 주요성과	관련 과제명

나. 초청 해외기술자

(1) 인적사항(한글)

성명	국문	{ }		생년월일	
	영문			성별	
여권번호				국적	
직장	업체	{ }		전화	
	부서			FAX	
	직위			E-mail	
	주소	{ - }			
주택	주소	{ - }			
동반가족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배우자				
	자녀				
	자녀				

(2) 학력

연도	학교명	성공	학위
...			
...			
...			
{ }			

(3)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4) 주요 논문 및 저서 발간 실적

구 분	제 목	게 세 기 ( )	게 세 일 자 ( )	비 고
학 문				
저 서				
* ( )				

(5)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실적

번 호	지 적 재 산 권 명	국 가 명	등 록 · 출 원 일	출 원 · 등 록 번 호
1				
2				
3				
4				
5				
* 주요 특허에 대한 요약문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 출원 · 등록증사본 첨부				

(6) 초청 목적과 관련된 과제(활동) 실적(연구, 개발, 성과)

번 호	과 제 명	활동 기년	과제 책임자 ( )	주요 성과 ( , know-how )
1				
2				
3				
4				
5				
<p>* 위 과제가 대한 요양관을 밑지로 작성하여 제출</p>				
<p>* 초청 목적과 관련된 성과 내용을 기술 ( )</p>				

다. 사업참여 인원

기위	설명	소속부서	선공 및 최종학위			수신등록번호	담당 분야	연리지 (1인)
			학교	졸업년도 (사위취득년도)	선공 학위			

4. 사업비

가. 사업비 구성 현황

(단위 : 원)

비목	현금	현물	합계	
1. 인건비				
2. 기술지출비				
				사단장
				이와는 임.사단
3. 기타 간접사업비				
총계				

나. 비목별 현황

① 인건비 : 원(민자 현물)

(단위 : 원/개월/%)

구분	성명	직위	인건비			계(A××/100)		
			원액(A)	참여기간(B)	참여율(C)	현금	현물	소계
발용						-		
업체						-		
( :는						-		
공통						-		
발용						-		
업체)		소계				-		
총계								

※ 인건비는 참여인력의 현물인건비를 말함

② 기술지도비 : 원

(단위 : 원)

시무 비목		내역	금액	종도	비고 ( / )
기술 지도비	해외기술지 도료				
	항공료				
	이전비				
	알선료				
	임차료				
합 계					

③ 기타 직접사업비 : 원(업체 현금/현물)

(단위 : 원)

시무 비목		내역	금액	종도	비고 ( / )
도지· 불 임차비					
장비 지 배 설치 및 운영비	장비 지가 구입비				
	장비 지가 임차비				
	시설 운영 비	재료구입비			
		장비유지·수리비			
		시작종료차비			
기술심리 원장비	기술심리수준비				
	기술도위/정리비				
	산업사안관찰·심리비				
여비					
해외기술지정차비 ( / )					
세입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수인발비				
	기타 세입정리				
수역					
이 지					
총 합 계					



### 5. 활용 업체 현황

<b>업 체 명</b>		<b>사업자등록번호</b>		
<b>주 소</b>	<b>{ - }</b>			
<b>URL 주소</b>				
<b>대 표 자</b>		<b>직 위</b>		
<b>전화번호</b>	<b>{C.P.}</b>	<b>F A X</b>		
<b>E-mail</b>				
<b>기관구분</b>	<b>중소기업 (        ), (        )</b>			
<b>주요신품</b>				
<b>자본금(        )</b>				
<b>연년도 매출액(        )</b>	<b>/ 200    년</b>			
<b>주요 납품처</b>				
<b>상시근로자 수(        )</b>				
<b>연구인력(        )</b>				
<b>주요 연구시설</b>	<b>장비/시설명</b>	<b>용도</b>	<b>수량</b>	<b>비고 (        )</b>
<b>주요 선언회 집계</b>				

【붙임1】

## 신청서 작성요령

1. 초청분야 :

기계/로봇 및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 기계관련산업분야

이)	:	:	: 철삭가공기계
대분류 :	:	/	: 로봇 선기 기술
* 산업기술분류체계 참조			

2. 연구사업명: 현재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인 기술개발사업명 기재요

예)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등

3. 총연구비 : 연구비 지원 기관명을 함께 기재할 것

예)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학술진흥재단 등

4. 연구과제명 : 해외기술자가 수행할 연구과제명

5. 연구기간 : 관련 과제의 실제 연구기간

예) 2005. 6. 1 ~ 2006. 7. 30(1년)

6. 기활용 여부 : 기존에 본 사업으로 활용한 기간을 기재

7. 기타

- ① 상시근로자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등을 첨부할 것
- ② 사업 목표 및 내용 등은 정량적으로 기재할 것
- ③ 2개 이상의 업체가 해외기술자를 공동 활용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및 내용 등이 구별 가능하게끔 작성할 것
- ④ 사업비는 국비 및 도비 지원금 외에 해외기술자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 경비를 자부담으로 하여 작성할 것
- ⑤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할 것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반드시 목차와 Page를 붙일 것)

## 산업기술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b>기계소재</b>	① 금속재료	<b>전기전자</b>	10 반응용시스템
	② 구조/접합		6 반도체장비
	③ 소성가공/열처리		7 증전기기
	④ 표면처리		8 의료기기
	⑤ 정밀생산기계		9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⑥ 자동차/선도차량		6 전기전자부품
	⑦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1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⑧ 요소부품		2 측정기기
	⑨ 고온/동화기계		3 영상/방향기기
	⑩ 산업/일반기계		4 전지
	⑪ 조선/해양시스템		5 디스플레이
	⑫ 항공/우주시스템		3 심우제조
	⑬ 나노·마이크로시스템		4 연쇄가공
	⑭ 보건/의료기계시스템		5 심우제품
<b>정보통신</b>	6 시스템 H/W	<b>심우화학</b>	6 정민화학
	7 시스템응용 H/W		7 고분자재료
	8 응용 S/W		8 화학공정
	9 정보기술 S/W		9 화학제품
	6 시스템 S/W		6 대기/수질
	1 통신기기		1 수질/해양
	2 통신부품		2 생물소재/식품
			3 생물공정/기기
	4 세라믹재료		

종분류	소분류	종분류	소분류
금속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재료</li> <li>· 기능재료</li> <li>· 복합재료</li> <li>· 비료공정기술</li> <li>· 기계/ 전자부품소재기술</li> <li>· 미세소재기술</li> <li>· 합체재료기술</li> <li>· 금속성재/ 합금기술</li> <li>· 재료분석/ 평가기술</li> <li>·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li> </ul>	표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처리기술</li> <li>· 도금기술</li> <li>· 박막제조기술</li> <li>· 산사기술</li> <li>· 세정기술</li> <li>· 도/ 도식기술</li> <li>· 열탄/ 인화기술</li> <li>·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li> <li>· 표면불성 개질기술</li> <li>· 기타 표면처리기술</li> </ul>
주조/ 용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명주조</li> <li>· 압형주조</li> <li>· 특수주조</li> <li>· 다이캐스팅</li> <li>· 용주/ 용접재료</li> <li>· Brazing/Soldering</li> <li>· 아크용접</li> <li>· 특수용접/ 복합기술</li> <li>· 용접부 분석평가기술</li> <li>· 용주/ 용접 S/W</li> <li>· 기타 주조/ 용접 관련기술</li> </ul>	절단 생산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삭 가공기계</li> <li>· 연삭/ 연마 가공기계</li> <li>·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li> <li>· 전기/ 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li> <li>· 레이저이장치</li> <li>· 프레스 기계</li> <li>· 압출 기계</li> <li>· CAD/CAM S/W</li> <li>· 기타 생산생산기계 관련기술</li> </ul>
소성 가공/ 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성기술</li> <li>· 압출기술</li> <li>· 단말기술</li> <li>· 압연기술</li> <li>· 소재 성형기술</li> <li>· 분말제조기술</li> <li>· 분말가공기술</li> <li>· 소성가공 관련 S/W</li> <li>· 기타 소성가공/ 분말 관련기술</li> </ul>	자동차/ 철도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li> <li>· 변기장치</li> <li>· 차량화 기술</li> <li>· 구조기술</li> <li>· 인공/ 음성지감기술</li> <li>· 안전도 향상기술</li> <li>· 차량 지능화 기술</li> <li>· 철도차량 추진/ 제어기술</li> <li>· 시스템 통합기술</li> <li>· 기타 자동차/ 철도차량 관련기술</li> </ul>

종류	소분류	종류	소분류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조화/ 냉동기계</li> <li>· 난방/ 난열기</li> <li>· 냉난방기계</li> <li>· 에어컨 실외기</li> <li>· 배기팬 제어실외기</li> <li>· 배기오염 방지 실외기</li> <li>· 냉수/ 냉동 실외기</li> <li>· 에너지/ 냉열 제어실외기</li> <li>· BMS/ BEMS 시스템 기술</li> <li>· 에너지/ 냉열 기계 시스템 관련 S/W</li> <li>· 기타 에너지/ 냉열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li> </ul>	산업/일반/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계</li> <li>· 인쇄/ 복합기계</li> <li>· 금속포장기계</li> <li>· 전선/ 파선기계</li> <li>· 일반가공기계</li> <li>· 강제수송기계</li> <li>· 송출회차기계</li> <li>· 정보산업장비</li> <li>· 선반/ S/W</li> <li>· 기타 산업/ 일반기계 관련기술</li> </ul>
요소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교환 요소부품</li> <li>· 난방용 요소부품</li> <li>· 냉수/ 냉동용 요소부품</li> <li>· 배기팬용 요소부품</li> <li>· 배기용 요소부품</li> <li>· 냉압 부품</li> <li>· 냉매에이더</li> <li>· 실삭/ 실삭공구</li> <li>· 실공구</li> <li>· 실형</li> <li>· 요소부품 관련 S/W</li> <li>· 기타 요소부품</li> </ul>	조선/해양/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소재/ 배선기술</li> <li>· 선형 개발/ 성능해석기술</li> <li>· 추진/ 기 및 추진계통부품</li> <li>· 갑판실외기 및 항해통신장비</li> <li>· 선박생산시스템/ 배선공법</li> <li>· 선양구조물/ 선미기술</li> <li>· 선양대지 및 타사장비</li> <li>· 선양 환경/ 배전실외기</li> <li>· 조선/ S/W</li> <li>· 기타 조선/ 선양 시스템 관련기술</li> </ul>
로봇/자동화/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설계기술</li> <li>· 로봇 제어 및 자동화기술</li> <li>· 로봇 비전 및 영상처리 기술</li> <li>· 기계 자동화 기술</li> <li>· 로봇/ 선미 이송기술</li> <li>· 자동화 관련 제어/ 제어 기술</li> <li>· 로봇/ S/W</li> <li>· 기타 로봇/ 자동화기계 관련기술</li> </ul>	항공/우주/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기계</li> <li>·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li> <li>·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제어시스템</li> <li>· 고정익/ 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li> <li>· 인공위성체/ 탑재체 시스템</li> <li>·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li> <li>·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li> <li>· 항공우주 지상실외기 시스템</li> <li>· 항공/ S/W</li> <li>· 기타 항공/ 우주 시스템 관련기술</li> </ul>



종류	소분류	종류	소분류
광응용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지 판넬부품 및 발생장치</li> <li>· 이미지 가공기</li> <li>· 열상기기</li> <li>· 레이저기기</li> <li>· 광원</li> <li>· 광소재</li> <li>· 광부품</li> <li>· 광소자</li> <li>· 기타 광응용 기기</li> </ul>	의료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신호기기</li> <li>· 의료영상기기</li> <li>· 영상재료/기기</li> <li>· 진단 및 복지의료기기</li> <li>· 인공장기</li> <li>· 실험분석기기</li> <li>· 방사의료기기</li> <li>· 치료재료/기기</li> <li>· 임플란트</li> <li>· 의료정보시스템</li> <li>· 원격 및 제독 의료기기</li> <li>· 기타 의료기기</li> </ul>
반도체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장비</li> <li>· 반도체재료</li> <li>· 에칭 장비</li> <li>· CMP장비</li> <li>· 박막장비</li> <li>· 이온주입장비</li> <li>· 리소장비</li> <li>· 패키징장비</li> <li>· 측정/검사 장비</li> <li>·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li> <li>· 기타 반도체장비</li> </ul>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소자</li> <li>· 집합소자</li> <li>· ICMS 소자</li> <li>· 센서 소자</li> <li>· 반도체 재료</li> <li>· 통신용 SoC</li> <li>· 산업용 SoC</li> <li>· 설계 Tool</li> <li>· 기타 반도체 소자</li> </ul>
물전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기/전동기 및 제어</li> <li>· 전력변환기기</li> <li>· 전력용 재료</li> <li>· 전압기류</li> <li>· 전계기류</li> <li>· 배전 및 보호/차단장치</li> <li>· 자동화제어기기</li> <li>· 전기로</li> <li>· 전선</li> <li>· 전력도 기술/기법</li> <li>· 전기용접 및 가공</li> <li>· 전원장치</li> <li>· 에너지저장기기</li> <li>· 기타 물전기기</li> </ul>	전기 전사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능 통신 부품</li> <li>· 인쇄 부품</li> <li>· CB 부품</li> <li>· 페시터 부품</li> <li>· 수성재료 부품</li> <li>· 복합재료 부품</li> <li>· 집합 부품</li> <li>· 기타 전기전사부품</li> </ul>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정용 기기 및 전자응용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기기</li> <li>· 정보가전기기</li> <li>·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li> <li>· 조명기기</li> <li>· 소형전</li> <li>· 검색기전</li> <li>· 가정용 가스기기</li> <li>· 방기</li> <li>· 농기계</li> <li>· 금기</li> <li>· 다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li> </ul>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재료</li> <li>· 주 및 측정빙기 장비</li> <li>· 응용 및 팔용기술(IGV)</li> <li>· 차전자</li> <li>· 차전자</li> <li>· 고용량 커패시터</li> <li>· 다 전자</li> </ul>
계측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측기 및 부품</li> <li>· 화학량 시험/ 계측기</li> <li>· 불리양 시험/ 계측기</li> <li>· 계측기</li> <li>· 안전감시/ 단 계측제이기</li> <li>· 체 제어계측기</li> <li>· 사 계측기( )</li> <li>· 사 계측기( )</li> <li>· 계측기</li> <li>· 다 계측기기</li> </ul>	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li> <li>· DP</li> <li>· PD</li> <li>· I</li> <li>·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li> <li>· Paper</li> <li>· D</li> <li>· 디스플레이 제조장비</li> <li>·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시장비</li> <li>· 다 디스플레이</li> </ul>
영상/ 음향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상기</li> <li>· 합수신기</li> <li>· 원 영상기기</li> <li>· V 영상 및 기록기기</li> <li>· 상통신</li> <li>· 메라 및 캠코더</li> <li>· 광관</li> <li>· 대응 AV 기기</li> <li>· 오디오</li> <li>· 합 AV 기기</li> <li>· 음향 및 응용기기</li> <li>· 피키</li> <li>· 마이크로폰</li> <li>· 다 영상/ 음향기기</li> </ul>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스템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형컴퓨터</li> <li>· 개인용 컴퓨터</li> <li>· 서버용 컴퓨터</li> <li>· 초소형 컴퓨터</li> <li>· 정보입출력기기</li> <li>· 개인정보단말기(PDA )</li> <li>· 저장장치</li> <li>· 기타 시스템 H/W</li> </ul>	시스템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소프트웨어</li> <li>· 실시간 소프트웨어</li> <li>· 저장형 소프트웨어</li> <li>· 네트워크 소프트웨어</li> <li>· Middleware</li> <li>· 기타 시스템 소프트웨어</li> </ul>
시스템 응용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메딕스기기</li> <li>· 이동형 홈 기기</li> <li>· 측정기기</li> <li>· 개인기기</li> <li>· 측정기기</li> <li>· 기타 시스템응용 H/W</li> </ul>	통신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송/ 교환 기기</li> <li>· 가입자 액세스망</li> <li>· 가입자 구내망</li> <li>· 인터넷망 및 응용</li> <li>· 무선통신 단말기</li> <li>· 무선통신 단말기</li> <li>· 위성통신/ 초음속통신 기기</li> <li>· 광통신 기기</li> <li>· 지국 및 제어 기기</li> <li>· 기타 통신 기기</li> </ul>
응용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멀티미디어/ S/W</li> <li>· 저작도구</li> <li>· 음성정보기술(SIT)</li> <li>· 이동화용 응용 S/W</li> <li>· 보안관련 S/W</li> <li>· 플랫폼이전 S/W</li> <li>·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li> </ul>	통신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부품</li> <li>· 무선통신 부품</li> <li>· 무선통신 부품</li> <li>· 위성/ 초음속통신 관련 부품</li> <li>· 광통신 부품</li> <li>· 기타 통신 부품</li> </ul>
정보 기술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베이스 S/W</li> <li>· Internet/Intranet</li> <li>· 전자상거래</li> <li>· 디지털컨텐츠</li> <li>· CM/ERP/PDM</li> <li>· 텔레메딕스 S/W</li> <li>· 기타 정보기술 S/W</li> </ul>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섬유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합기질</li> <li>· 섬유방사</li> <li>· 천연섬유방직</li> <li>· 가공기술</li> <li>· 직기기술</li> <li>· 사실미</li> <li>· 가공실미</li> <li>· 산업용 섬유제조기술</li> <li>· 노섬유제조기술</li> <li>· 직실미</li> <li>· 나( )</li> </ul>	철강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중간체/ 제</li> <li>· 약제</li> <li>· 약 중간체/ 제</li> <li>· 약제</li> <li>· / 및 중간체</li> <li>· 면활성제</li> <li>· 활유</li> <li>· 가제</li> <li>· / 제</li> <li>· 작제/ 리트</li> <li>· 키제트 및 폼</li> <li>· 광제료</li> <li>· 장품/ 제</li> <li>· 전신업용 성민화하소제</li> <li>· 노용용기술</li> <li>· 나 합성용용제품</li> </ul>
염색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염기기술</li> <li>· 염기기술</li> <li>· 염기기술</li> <li>· 염기염색기술</li> <li>· 불리· 하석 가공기술</li> <li>· 색실미</li> <li>· 공실미</li> <li>· 료/ 제</li> <li>· 공제/ 제</li> <li>· 나</li> </ul>	고분자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반용/ 정기술</li> <li>· 질기술</li> <li>· 합재료제조기술</li> <li>· 전기· 사정보용 소재기술</li> <li>· 료용 소재기술</li> <li>· 에너지· 정신업용 소재기술</li> <li>· 수기능성 소재기술</li> <li>· 분자 제활용기술</li> <li>· 분자가공기술</li> <li>· 노소재기술</li> <li>· 나 고분자 재료</li> </ul>
섬유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포지조</li> <li>· 직포가공기술</li> <li>· 제기술</li> <li>· 류패션</li> <li>· 직기기술</li> <li>· 섬유제품실미</li> <li>· 산업용 섬유제품</li> <li>· 노섬유제품기술</li> <li>· 합섬유제품</li> <li>· 나 섬유제품기술</li> </ul>	화학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화학 부산물 응용 기술</li> <li>· 매 지조기술</li> <li>· 정시스템기술</li> <li>· 정실미기술</li> <li>· 초유기소재공정기술</li> <li>· 초무기소재공정기술</li> <li>· 나 화학공정</li> </ul>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화학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시</li> <li>· 전보전지</li> <li>· 구조과학</li> <li>· 연과학</li> <li>· 분극, , , 구 등</li> <li>· 농고유기술</li> <li>· 포츠용분</li> <li>· 무( )</li> <li>· 업니사인</li> <li>· 다 화학제품</li> </ul>	생물 소재/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의약품/ 재</li> <li>· 들화장품/ 재</li> <li>· 이오식품/ 재</li> <li>· 들농약/ 재</li> <li>· 들화학소재</li> <li>· 들환경소재</li> <li>· 약/ 단제</li> <li>· 다 생물소재/ 분</li> </ul>
대기/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li> <li>· 기오염 방지기술</li> <li>· 에너지절감/ 체에너지 기술</li> <li>· 경실미기술</li> <li>· 환경산업 부품· 재기술</li> <li>· 다 환경산업 기술</li> </ul>	생물 공정/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공정기술</li> <li>· 들전자/ 보</li> <li>· 들엔지니어링기술</li> <li>· 다 생물공정/ 기기</li> </ul>
수질/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오염 방지기술</li> <li>· 양오염 방지기술</li> <li>· 양오염 방지기술</li> <li>· 에너지절감/ 체에너지 기술</li> <li>· 경실미 기술</li> <li>· 환경산업부품· 재기술</li> <li>· 다 환경산업 기술</li> </ul>	세라믹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 , 화물</li> <li>· 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li> <li>· 리, , 방</li> <li>· 자기, 나일등</li> <li>· 결정</li> <li>· 라미제조공정기술</li> <li>· · 체 기능재료</li> <li>· · 자세라믹스</li> <li>· · 기 기능재료</li> <li>·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li> <li>· 다 세라믹재료</li> </ul>





에게 (을)의 신청에 의하여 (갑)이 정한 금액 ( )을 지급한다.

- (2) 항공료는 (을)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갑)은 1회(배우자 포함)에 한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 제 4 조 (지원금의 사용)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를 (을)의 책임하에 자체규정에 준하여 집행 하되, 반드시 해외기술자 본인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조 (초청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

(을)은 초청대상자의 활용이 종료되기 7일전까지 관계서류를 첨부, (갑)에게 초청활용 결과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 형식은 (갑)이 별도로 정한다.

#### 제 6 조 (계약의 변경)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초청활용계획서의 내용 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7 조 (계약의 해지)

- (1)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다)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2)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실제 해외기술자의 활용에 사용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나) 및 (다)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갑)은 지급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 제 8 조 (관계자료의 제출)

(을)은 (갑)의 필요에 따라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과 관련한 자료, 증빙서

류 등의 제시 및 제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9 조 (관계법령의 준수)

- (1)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 요령,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야 한다.
- (2) (을)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상기 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는 (갑)은 (을)과 기타 관계된 자에 대하여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및 사업관리지침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제 10 조 (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과의 협약 내용의 해석에 따른다.

### 제 10 조 (기타)

- (1)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 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은 본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 (2)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인)

(을) (업체명) 대표이사 (성명) (인)

활용책임자 (성명) (인)

**[별지6]**

## Medical Record

<b>Name of invitee :</b> _____
<b>Age :</b> _____ <b>Sex :</b> _____ <b>Height :</b> _____ <b>Weight :</b> _____
<b>1) If the invitee has had a history of illness or other disorders during the last 5 years, please describe treatment and present status.</b>
<b>2) List any abnormalities indicated in the chest X ray.</b>
<b>3) What is the invitee's normal blood pressure ?</b>
<b>4) Is the invitee free from infectious diseases (AIDS, tuberculosis, skin diseases, etc) ?</b>
<b>5) Is the invitee able physically and mentally to carry on intensive research away from his/her home ?</b>
<b>6) Describe the invitee's overall health condition (include remarks of the examining physician).</b>
<b>Name and address of clinic :</b> _____
<b>Date :</b> _____
<b>Name of physician :</b> _____
<b>Signature :</b> _____
<b>Date :</b> _____ <b>Signature of invitee :</b> _____



【별지8】

## 사업내용 변경의뢰서

<b>연구 과제명</b>					
<b>초청환용기간</b>	- ( ) ( ) ( )				
<b>초청 해외기술자</b>	<b>성명</b>	<b>성명</b>		<b>영문</b>	
	<b>소속</b>			<b>직위</b>	
	<b>생년월일</b>				
	<b>연락처</b>	<b>TEL</b>		<b>FAX</b>	
		<b>C. P.</b>		<b>E mail</b>	
		<b>주소</b>	( ) ( ) ( )		
<b>학위</b>		<b>원공</b>			
<b>환용책임자</b>	<b>성명</b>		<b>주민등록번호</b>		
	<b>소속</b>		<b>직위</b>		
	<b>연락처</b>	<b>TEL</b>		<b>FAX</b>	
		<b>C. P.</b>		<b>E mail</b>	
		<b>주소</b>	( ) ( ) ( )		
<b>변경전</b>			<b>변경후</b>		
<b>변경사유</b>					
<b>별지 사용 가능</b>					
해외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월 일					
환용책임자 ( ) ( )					
( ) ( ) ( )					
<b>제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귀하</b>					



【별지10】

##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 )	
테우자	( )	
쿠양자	( )	
	( )	
환용책임자	성명	연락처 Tel. : Fax. : C.P. :
	주소	
임대규모	형	입대지역 시( ) ( ) APT
임대신청기간	200      200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 <b>헤비기술자 초청 기술지도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임대주택 입수를 신청합니다.</b> </p> <p style="text-align: center;"> <b>200   년   월   일</b> </p> <p style="text-align: right;"> <b>환용책임자   ( )   ( )</b>  <b>OOO   ( )   ( )   ( )</b> </p>		
<p style="text-align: center;"> <b>제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귀하</b> </p> <p style="text-align: center;"> <b>상기인을 헤비기술자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신청합니다</b> </p> <p style="text-align: center;"> <b>200   년   월   일</b> </p> <p style="text-align: right;"> <b>제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 )</b> </p>		
<p style="text-align: center;"> <b>경상남도지사 귀하</b> </p>		

【별지11】

**경남기계산업기술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출서**

200 년 경남기계산업기술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  
사업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1. 3

2. 1 1

3. 1

200 년 원 일

해외기술자 ( )

환용책임자 ( )

환용업체상 ( )

제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귀하

## 요 약 서 ( )

<b>과 세 명</b>			
<b>활용 업체</b>		<b>대표자</b>	
<b>중소기업업체</b>	( )		
<b>활용 책임자</b>	<b>소 속</b>		<b>기 위</b>
	<b>성명( )</b>		<b>주민등록번호</b>
	<b>Tel</b>		<b>핸드폰</b>
	<b>Fax</b>		<b>E-mail</b>
<b>해외기술자</b>	<b>성명( )</b>		<b>생년월일</b>
	<b>선 공</b>		<b>국내연락처</b>
<b>활용 기간</b>	200 . . . . . 300 . . . . . ( )		
<b>출간보고기간</b>	200 . . . . . 300 . . . . . ( )		
<b>사 업 비</b> ( : )	<b>국 비 :</b>		
	<b>민간투자금 :</b>		

### 1. 최종사업 목표 및 내용

### 2. 사업집계 및 성과

※ 주요 납품집계( ) ,  
 시역지선권( , ( ) , ( ) ) ,  
 제출물가, , 장연 등을 사업성리에 기술함 것

###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사업(활용) 목표 및 내용

### 가. 사업(활용) 목표

※ 당초 사업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나. 사업(활용) 내용

※ 당초 사업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다. 사업변경내역

※ 사업변경 신청 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작성

### 라. 추진체계

#### (1) 활용업체 개요

#### (2) 해외기술자

※ 해외기술자의 성명, 연락처, 주요 학력 및 경력 등을 작성

#### (3) 활용책임자

※ 활용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주요 학력 및 경력 등을 작성

#### (4) 추진 방안

## 2.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

### 가. 계획대비 실적표

구분	계획	실적

나. 해외기술자 활동 내역

- ※ 계획대비 실적을 정량적으로 기재
- ※ 해외기술자의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의 활동 내역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다. 국내활동 내용

-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실제로 해외기술자가 활동한 내역을 기재 (타 업체 기술지도, 세미나, 초청특강 등을 기재,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3. 초청활용 성과

가. 매출증가

구분	사위전	사위후	주요 납품처, , 금액 등
매출액			
수출액			

나. 수입대체 효과

구분	사위전	사위후	비고
수입대체			※ 기술기술통계

다. 지적재산권

순번	지적재산권 명칭	국가명	등록( )일	등록( )일	구분

※ 구분란에는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 S/W등록, 상표 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라. 학술활동

순번	논문 제목/ 학술발표 제목	국가명	지지명	권, 페이지	게재/발표일	구분

※ 구분란에는 논문 게재, 학술 발표, 강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마. 기술지식의 이전

### (1) 세미나 및 강연

순번	세 목	주요 내용	일시	장소	대상	한석 인원	기타

※ 기타란에는 자사, 타사로 구분하여 기입

### (2) 강의

순번	세 목	주요 내용	일시	장소	대상	한석 인원	기타

※ 대학명 등을 기입

### (3) 기술지도 및 연구자문

순번	세 목	주요 내용	일시	장소	대상	구분

※ 구분란에는 기술지도, 연구자문 등으로 구분 기재

### (4) 기술이전

순번	기술이전 내용	이전기업 또는 대상

### (5) 기술개발

순번	기술개발 내용	비고

※ 비고란에는 상업화 내용 등을 기재

**(6) 정보제공**

<b>순번</b>	<b>내용</b>	<b>비고</b>

※ 해외기술자가 제공한 정보 등을 기재

**(7) 기타**

※ 기타 해외기술자 활용으로 인한 성과 등을 상세히 기재

**4.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b>구분</b>	<b>시위결정 금액</b>		<b>수령액</b>	<b>집행 금액</b>	<b>비고</b>
	<b>시위금</b>	<b>자부담</b>			
<b>계</b>					
<b>자문료</b>					
<b>항공료</b>					
<b>이석비</b>					
<b>알식료</b>					
<b>인차비</b>					

#### 4. 사업추진실적현황표

※ 해외기술사 활용 내역을 아래 표의 내용대로 구분 작성

기술지원유형	정부기술지원유형	연수	비고
기술개발지원	심층분계급 지원		
	설계 및 역설계 시도		
	시제 분계급 지원		
	Scale up 인증지원		
	심공정 개발 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기다		
군식 및 제작 지원	시설 및 장비활용지원		
	고가지원분석 지원		
	시제 분제작 지원		
	현장기술자문·지도		
	자동화시스템구축 시도		
	기다		
특허·인증 지원	특허출원등록지원		
	규격인증, 인증지원		
	제품안전, 효능평가		
	표준제정 및 규격 보급지원		
	국제상호인증을 권장당		
	기다		
정보·관리 지원	원기술 및 치장정보지공		
	품질관리, 보증지원		
	발전역진 및 권리시도		
	기술관리 시도		
	기술경영 지원		
	기다		
기술이전	기술이전 지원		
	기술마케팅 지원		
	기다		
기다			
총합			

## 5. 애로 및 건의사항

※ 사업 추진 시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기재

## 6. 기타

【별지12】

**경남기계산업기술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200 년 경남기계산업기술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1. 5

2. 1

3. 1

200 년 월 일

해외기술자 ( )

환용책임자 ( )

환용업체상 ( )

제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 귀하

## 요 약 서 ( )

<b>과 세 명</b>			
<b>활용 업체</b>		<b>대표자</b>	
<b>중소벤처기업</b>	( )		
<b>활용 책임자</b>	<b>소 속</b>		<b>기 위</b>
	<b>성명( )</b>		<b>주민등록번호</b>
	<b>Id</b>		<b>핸드폰</b>
	<b>Fax</b>		<b>E-mail</b>
<b>해외기술자</b>	<b>성명( )</b>		<b>생년월일</b>
	<b>연 령</b>		<b>국내연락처</b>
<b>활용 기간</b>	200 . . . . . 300 . . . . . ( )		
<b>사 업 비 ( : )</b>	<b>국 비 :</b>		
	<b>민간투자금 :</b>		

### 1. 최종사업 목표 및 내용

### 2. 사업집행 및 성과

※ 주요 납품집적( ) ,  
 시역지선권( , ( ) , ( ) ) ,  
 매출증가, , 장연 등을 사업성과에 기술할 것

### 3.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1. 사업(활용) 목표 및 내용

## 가. 사업(활용) 목표

※ 당초 사업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나. 사업(활용) 내용 및 범위

※ 당초 사업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 다. 사업변경내역

※ 사업변경 신청 후 승인을 받은 경우만 작성

## 라. 추진전략

### (1) 추진 방안

※ 주요 추진 전략을 기재

### (2) 추진 조직

※ 추진 조직을 표로 기재

### (3) 활용업체 개요

### (4) 해외기술자

※ 해외기술자의 성명, 연락처, 주요 학력 및 경력 등을 작성

### (5) 활용책임자

※ 활용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주요 학력 및 경력 등을 작성

## 2. 사업추진 실적 및 현황

### 가. 계획대비 실적표

구분	계획	진척

### 나. 해외기술자 활동 내역

- ※ 계획대비 실적을 정량적으로 기재
- ※ 해외기술자의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의 활동 내역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다. 국내활동 내용

- ※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실제로 해외기술자가 활동한 내역을 기재  
(타 업체 기술지도, 세미나, 초청특강 등을 기재,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 3. 초청활용 성과

### 가. 매출증가

구분	사업전	사업후	주요 납품처, , 금액 등
매출액			
수출액			

### 나. 수입대체 효과

구분	사업전	사업후	비고
수입대체			※ 기술 기술

다. 지적재산권

순번	지적재산권 명칭	국가명	등록( )일	등록( )번호	구분

※ 구분란에는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 등록, S/W등록, 상표 등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라. 학술활동

순번	논문 제목/ 학술발표 제목	국가명	지지명	권, 페이지	게재/발표일	구분

※ 구분란에는 논문 게재, 학술 발표, 강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마. 기술지식의 이전

(1) 세미나 및 강연

순번	세 목	주요 내용	일시	장소	대상	한석 인원	기타

※ 기타란에는 자사, 타사로 구분하여 기입

(2) 강의

순번	세 목	주요 내용	일시	장소	대상	한석 인원	기타

※ 대학명 등을 기입

(3) 기술지도 및 연구자문

순번	세 목	주요 내용	일시	장소	대상	구분

※ 구분란에는 기술지도, 연구자문 등으로 구분 기재

**(4) 기술이전**

순번	기술이전 내용	이전기업 또는 대상

**(5) 기술개발**

순번	기술개발 내용	비고

※ 비고란에는 상업화 내용 등을 기재

**(6) 정보제공**

순번	내용	비고

※ 해외기술자가 제공한 정보 등을 기재

**(7) 기타**

※ 기타 해외기술자 활용으로 인한 성과 등을 상세히 기재

#### 4. 사업추진실적현황표

※ 해외기술사 활용 내역을 아래 표의 내용대로 구분 작성

기술지원유형	정부기술지원유형	연수	비고
기술개발지원	심층분계급 지원		
	설계 및 역설계 시도		
	시제 분계급 지원		
	Scale up 인증지원		
	심공정 개발 지원		
	제품고급화 기술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기다		
군식 및 제작 지원	시설 및 장비활용지원		
	고가지원분석 지원		
	시제 분제작 지원		
	현장기술자문·지도		
	자동화시스템구축 시도		
	기다		
특허·인증 지원	특허출원등록지원		
	규격인증, 인증지원		
	제품안전, 효능평가		
	표준제정 및 규격 보급지원		
	국제상호인증을 권장등		
	기다		
정보·관리 지원	원기술 및 치장정보제공		
	품질관리, 보증지원		
	발전역진 및 권리시도		
	기술관리 시도		
	기술경영 지원		
	기다		
기술이전	기술이전 지원		
	기술마케팅 지원		
	기다		
기다			
총합			

## **5. 해외기술자 및 관련기관과의 향후 협력 관계**

※ 해외기술자 활용 후의 지속적인 기술 자문 등의 계획을 기재

## **6. 애로 및 건의사항**

※ 해외기술자 및 활용책임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기재

## **7. 우수(수범) 사례**

※ 대표적인 상업화 실적, 납품 실적 등이 있으면 해외기술자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기재

## **8. 기타**

**【별지13】**

<b>경남기계산업기술지원사업</b> <b>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b>				
<b>과 세 명</b>				
<b>활용업체</b>			<b>활용책임자</b>	
<b>공능활용업체</b>	( )			
<b>활용기간</b>	300 . . . . . 300 . . . . . ( 개월 )			
<b>당회년도 사업비 ( : )</b>	<b>구 분</b>	<b>원 구</b>	<b>원 별</b>	<b>압 거</b>
	<b>국 비</b>		-	
	<b>도 비</b>		-	
	<b>업체부담금</b>			
	<b>이자일련액</b>		-	
	<b>합 계</b>			
<b>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운영요령, 시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및 사업관리지침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b>				
<b>붙임 : 1. ( )</b> 2. ( ) 3. ( ) 4. ( ) 5. ( ) ※ 상기외에 「 ( ) 」				
300 . . . . .				
<b>활용책임자 : ( )</b>				
<b>활용업체장 : ( )</b>				
<b>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표이사</b>				

##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비 사용명세서」

### 1. 총괄

#### 가.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

(단위 : 원)

구분		당초계획 또는 발생금액(A)			사 용 금 액(B)		잔 액(C) (C=A-B)	
		구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지구비								
인건비		민지						
도지·도청 임차비		민지						
장비·시설 및 운영비	장비·시설 구입비	민지						
	장비·시설 임차비	민지						
	시설 운영비	민지						
	장비유지·수리비	민지						
	시작품·제작비	민지						
기술지도비	해외기술자 지급료	국비						
		민지						
	항공료	국비						
		민지						
	이전비	국비						
		민지						
기술심사 원장의	기술심사수준비	민지						
	기술도위/서면비	민지						
	산업재산권출원·출력비	민지						
순계								
여비		민지						
해외기술자실차비		민지						
세입비	회의비	민지						
	사무용품비	민지						
	수인발비	민지						
	기타 세입정리	민지						
순계								
이 지								
총 합 계								

※ 국비, 도비, 업체부담금 합계에 대한 총괄 당초계획, 사용내역, 발생이자 등을 해당란에 기재

나. 사업비 비목별 증감 사유

--

다. 사업비 입·출금 세부내역

(단위 : 원)

입 금				출 금		세 요	비 고
계 난		활용업체( )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 통장 사본을 첨부 제출

## 2. 비목별 사용명세서

### ① 인건비(현물)

비목	일자	수입등록번호	성명	본사업참여율	금액
인건비	200년 월 일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 ② 기술지도비(현금)

비목 총합금	일자	사용내역	지급처	금액	증빙번호
:	200년 월 일				

※ 국비, 도비, 민자 현금이 투입된 자문료, 항공료, 이전료, 알선료 및 아파트 임차료를 기재

③ 기타 사업비(현금)

비목 출납금	일자	사용내역	지급지	금액	증빙번호
	2020년 1월 1일				

※ 기술지도비를 제외한 기타 현금이 투입된 내용을 비목별로 작성

작성 방법
1) 비목별로 사용내역을 집행일자 순으로 표기
2) 사용내역서 증빙서류에 증빙번호를 부여하여 시·군·구·읍·면·동·리·구분리의 비목에 따라
3)
4) 정렬하여 작성한다.

## 해외기술자초청기술지도사업 현물출자 사용명세서

<b>회 세 명</b>			
<b>활 용 업 체</b>		<b>현물책임자</b>	

위의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출연한 현물부담금을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구 분		구 약 ( : )	
<b>현물출자 구매 항목</b>			
<b>현물 출자 내용</b>	<b>건물·기타 및 세</b>	<b>출 자 금 액</b>	
		<b>주요출자내용</b>	
	<b>토 지 ( )</b>	<b>출 자 금 액</b>	
		<b>주요출자내용</b>	
	<b>지 실 ( )</b>	<b>출 자 금 액</b>	
		<b>주요출자내용</b>	
	<b>장비 유지·수 시 각 음 제 각</b>	<b>출 자 금 액</b>	
		<b>주요출자내용</b>	

200 년 월 일

000(업체명) 대표이사 (성명) (인)

※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을 출자금액 및 주요 출자 내용을 기재

【별지14】

## 행위별 제재내용

제제사유	제제대상	제제기간	환수금	기타제제
헤외기술자 활용업체의 중대한 계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시업수행으로 인해 시업의 계속수행이 어렵거나, ( 그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 지침 등 중요시행의 위반 등)	활용업체, 시업책임자	5 1 이내	시업미진액	제제시실 공표
시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업체, 시업책임자	2 1 이내	시업미진액	제제시실 공표
활용업체가 시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업체, 시업책임자	2 1 이내	시업미진액	제제시실 공표
활용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시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총괄책임자, 시업책임자	2 1 이내	시업미진액	제제시실 공표
기타 산업지원부설관이 지역산업진흥정책 수행상 시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시업미진액	-
중간보고서, ,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3 1원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활용업체	2 1 이내	시업미진액	제제시실 공표
지원중단 또는 실제로 평가된 경우	활용업체, 시업책임자	5 1 이내	시업미진액	제제시실 공표
시업비의 유용 등 부정 사용	활용업체, 시업책임자	5 1 이내	환 수	제제시실 공표
추경대상지가 속기에 대하여 명백한 불이익을 주지 않았을 경우( , )	헤외기술자	5 1 이내	시업미진액	제제시실 공표
시업의 정산결과 환수금을 3 1원 이상 넘부하지 않은 경우	활용업체	1 1 이내	정산결과 환수금액	제제시실 공표
재난의 시정 조치 불이행	활용업체	2 1 이내	환 수	제제시실 공표